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5.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6. 5

다. 상 정 일 자 : 2003. 6. 5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총무과장 조 규 문

나. 주요내용

- 1998년부터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한 표준 정원제를 대폭 개선. 재시행함으로써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의 자율성, 탄력성을 제고함은 물론
-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등으로 지방공무원 직종, 직급 구조가 변화되어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조직의 정상화를 기하고,
-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 11. 10 증원되었던 한시정원 전산직 2명 (6급 1, 7급 1)의 존속기한이 2002. 12. 31에서 2004. 6. 30까지 연장승인되었기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우리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표준정원제시행동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시행지침(행정자치부자제 12200-247, 2003. 5. 9)에 의거 607명에서 표준정원인 639명으로 함.
-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한시정원 전산직 2명의 존속기한을 2004. 6. 30까지 연장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함.
(안 조례 제1649호 부칙 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현범)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시행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시행지침에 따라 새로이 화순군의 정원이 변경되었으며, 아울러,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제108회 정례회에서 2003. 6. 30까지 인정하였던 것을 2004. 6. 30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임. 아울러 내용상 별다른 의견이 없음.

○ 본 개정안의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의결”

첨 부 :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3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24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15명.

조례 제1649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부칙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2004년 6월 30일 까지로 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0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592명</p> <p>2. 의회사무과의 정원 : 15명</p> <p>조례 제1649호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p> <p>①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p>	<p>제2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3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624명</p> <p>2. 의회사무과의 정원 : 15명</p> <p>조례 제1649호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p> <p>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2004년 7월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p>